2014년 10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10월 1일(수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• 과장 : 조경원(042-481-4545)
• 문의 : 중소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• 처장 : 이상국(055-751-9570)
• 사무관 : 강신천(042-481-4382)
• 주무관 : 백진욱(042-481-4375)
• 팀 장 : 박길원(055-751-9571)
• 대 리 : 박혜정(055-751-9573)

창조경제시대, 문화융성을 위한 콘텐츠 금융지원

- 유망 콘텐츠에 대한 「프로젝트 금융형 대출」 시행 -

□ 창조경제 시대, **문화콘텐츠 산업**의 **경쟁력 강화**를 위해 메자닌(투+융자) 금융의 특성을 가미한 **"프로젝트 금융형 대출" 상품이 시범 운영**된다.

□ **중소기업청**(청장 한정화)과 **중소기업진흥공단**(이사장 박철규)은 **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**을 통해 **유망 콘텐츠**(게임, 음악, 뮤지컬, 애니-캐릭터 등)**에 대한 '프로젝트형 대출'**을 **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□ 금번 시행하는 **"프로젝트 금융형 대출"**은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**"특정 프로젝트 단위"**의 **사업성 평가**를 통해 지원하는 **대출상품**으로,

○ 우선 지원대상은 **문화체육관광부**가 선정한 **5대 킬러콘텐츠**를 **중심**으로 **게임, 음악, 뮤지컬, 애니-캐릭터 등 소외장르**를 **대상**으로 하되,

○ **정책자금의 공적기능***을 고려, **대기업 중심**으로 **'수직계열화'가 이루어진 "영화", 민간VC 선투자 프로젝트**는 지원에서 **제외**한다.

* 민간 실패영역의 보완기능 수행, 민간투자 영역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후속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 수행

□ **"프로젝트 금융형" 대출**의 **세부 운용기준**으로는,

(1) **(운용규모)** 금융지원 방식 및 성격 등이 유사한 **"투융자복합금융('14, 1,500억원)" 예산중 50억원**을 재원으로 **활용**

(2) **(융자대상)** 문화콘텐츠산업 부문 **특정 프로젝트 추진**을 위해 **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**(spc, "이하 문전사")

* 금년도 시범사업임을 감안, 프로젝트 독립성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전사를 융자대상으로 하고, 향후 지원범위(문전사 + 일반 프로젝트)를 확대할 예정

(3) **(융자조건) 대출기간 7년**이내, **한도는 프로젝트당 최대 10억원**(소요자금의 70% 이내), **금리는 4%, 이익참가부 사채 인수*** **방식**

* 만기시 원리금 회수 후 이익배당 방식으로 제작자(프로젝트) 창작기여도(40%)를 우선 인정하고 이익금(60%)에서 지원(PB 인수금액)비중에 해당하는 이익금 수취

(4) **(융자범위)** 소요자금 대부분이 **콘텐츠 제작비 등 경상적 경비가 주류**를 이룸에 따라 **운전자금으로 한정**(시설자금은 제외)

(5) **(지원절차) 한국콘텐츠진흥원**의 **지원사업 참여업체**를 **대상**으로 **"프로젝트"**에 대한 **기술·사업성 평가 후, 심의위원회 의결**을 통해 **융자지원 여부**를 **결정**

* ①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·사업성 평가 → ② 심의위원회 심층평가 → ③ 사채 인수심의, 사업(자산)관리 위탁계약 체결 → ④ 융자실시

□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, **중진공**(이사장 박철규)과 **콘진원**(원장 홍상표)은 오는 **10월 8일(수) 업무협약**(MOU, 콘텐츠코리아랩 : 서울 종로구 소재)을 **체결**하고,

○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, 양 기관은 **문화융성** 및 **창조경제 구현**을 위해 **유망 문화콘텐츠 분야에 필요한** 실질적·효과적인 **연계지원 방안**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**중소기업청 관계자는** 문화콘텐츠 산업중 **민간 금융지원 소외영역**(장르)을 대상으로 **제작 초기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연계지원**할 수 있는 **신규 금융수단**을 **제공**함으로써,

○ **프로젝트의 성공률**과 함께 **제작자의 수익화 기여,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효과**도 **제고**할 수 있는 **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**한다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백진욱 주무관(☎ 042-481-43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"프로젝트 금융형 대출" 사업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**콘텐츠기업**은 **90% 이상**이 **'10-10-10' 구조**의 영세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**민간 금융권 이용 곤란**

* 10-10-10 구조 : 자본금 10억원 이하, 매출 10억원 이하, 종업원 10인 이하

- 기존 금융지원제도는 **제작사의 재무평가 중심**으로 **운영**되어 **영세 콘텐츠기업**에 대한 **지원**은 **제한적**

⇒ 투자 및 자금 회수기간이 짧은 콘텐츠 업종의 특성을 반영, 기업이 아닌 **특정 프로젝트**를 **대상**으로 **금융지원**

□ 주요 내용

○ **(융자방식)** 콘텐츠기업이 **특정 프로젝트**(공연, 음반, 게임 등)**를 추진할 목적**으로 설립한 **SPC가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(PB)를 인수**

* 이익참가부 사채(PB : Participating Bond) :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수취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(개정상법('11.4)에 의해 비상장법인도 발행가능)

* 프로젝트 금융 :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신용공여, 출자, 그 밖의 자금지원(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68조)

○ **(융자대상)**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설립된 **문화산업전문회사(SPC)*에 대출** → 프로젝트 종료시 **수익지분율**에 따라 **회수**

* 특수목적회사로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투자자 등에게 수익배분 (문화산업진흥법)

○ **(기관협업) 한국콘텐츠진흥원**의 **지원사업 결과 공유**를 통한 **수요 발굴**(기관간 MOU 체결, '14. 10. 8)

* '14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(주관 : 중진공, 협조 : 콘진원)로 선정('14. 5월, 기재부)

□ 추진계획

○ **'14년 10월부터** 약 50억원 규모로 **시범 운영**

* 재원은 기존 투융자복합금융('14년 예산 1,500억원)을 활용

참고 2 프로젝트금융 융자지원 절차

프로세스	주요 내용	비 고
사업공고	▪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고	중기청
⇩		
유망프로젝트 추천	▪ 콘진원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유망 프로젝트 추천	콘텐츠진흥원
⇩		
자금신청 및 접수	▪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신청서 접수	신청업체→중진공
⇩		
1차 사업타당성 평가	▪ 프로젝트 추진주체 및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	중진공
⇩		
2차 사업타당성 평가	▪ 프로젝트 사업성 및 성장성, 제출자료 적정성, 운영구조 등 평가	중진공, 내·외부전문가
⇩		
심의위원회 개최	▪ 자금지원 여부, 사채인수조건, 운영구조 심의, 승인	중진공, 콘텐츠진흥원
⇩		
각종 계약 체결 및 자금 융자	▪ 사업관리 및 자산관리 위탁 계약 등 프로젝트 운영관련 계약 체결 ▪ 사채인수계약 체결 및 자금 융자	문전사, 중진공, 사업관리자, 자산관리자 등
⇩		
사후관리	▪ 문전사 운영관리 및 대출금 회수	자산관리자 등 위탁관리기관, 중진공

참고 3 문화산업전문회사(SPC) 설명자료

□ 문화산업전문회사 개념

○ **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 수행**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 회사로 서류로만 존재(사업장, 직원×)하는 **명목회사(Paper Company)**

- 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하여 **직접 프로젝트를 수행**하되, 자금흐름과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해 **프로젝트와 자금관리 부분을 각기 다른 회사**에 **위탁 수행**

*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범,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여 수익 배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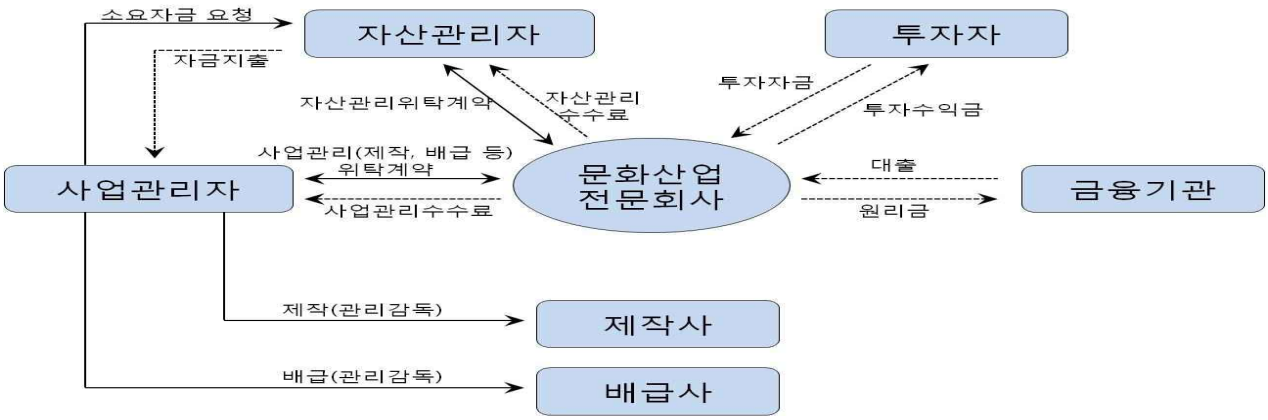
□ 도입 배경

○ 동 분야는 **프로젝트 투자가 일반화**되어 있으나 **투자금과 제작사 자금이 분리되지 않은채**로 **운용**되는 현상이 빈번

→ 이로 인해, **자금운용의 불투명성, 투자자 보호불가** 등의 문제 야기

* '05년 우상호 의원이 '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' 발의로 문화산업분야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'문화산업전문회사(SPC)'의 설립 법적근거 마련

< 문화산업전문회사 운용구조 >



□ 기대 효과

○ **투자재원의 투명성 제고**, 자금조달의 다양화 및 원활화

○ **프로젝트의 독립성 보장**, 프로젝트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하는 산업여건 조성